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정산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△△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△△과는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지방계약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■■■■■■에 대한 공사 계약 업무를 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르면, 계약담당자가 공사,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으며,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(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)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△△과에서는 '2023년 ■■■■■■ 그린리모델링 공사(건축)'외 1건의 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4대

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당초 설계 내역서 상의 사회보험료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△△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